

인증검사 수수료 (제58조의10 관련)

(단위: 원)

구 분	선박의 종류	기본수수료	수수료
해사노동적합선언서 승인			67,360
최초인증검사	제1군에 속하는 선박	67,360	기본수수료 × 톤수계수
갱신인증검사	제2군에 속하는 선박	84,200	
중간인증검사	제1군에 속하는 선박	50,520	
	제2군에 속하는 선박	67,360	
임시인증검사	제1군에 속하는 선박	50,520	
	제2군에 속하는 선박	50,520	

<비 고>

1. 위 표에 따른 선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

- 가. 제1군: 유조선 · 화학제품운반선 · 가스운반선 · 산적화물선 · 고속여객선 · 고속화물선 및 그 밖의 화물선
- 나. 제2군: 여객선 및 이동식해양구조물

2. 위 표에 따른 톤수계수는 다음과 같다.

- 가. 총톤수 500톤 미만: 0.8
- 나. 총톤수 500톤 이상 1,600톤 미만: 0.9
- 다. 총톤수 1,600톤 이상: 1

3. 공휴일에 하는 인증검사의 수수료는 위 표에 따른 수수료에 50퍼센트를 가산한 금액으로 하고, 국외에서의 인증검사 수수료는 위 표에 따른 수수료의 4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.

4. 인증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인증검사자의 출장에 드는 여비를 부담한다.